

한국과 독일의 기혼여성 고용 불평등 비교

윤미례*·김태일**

각 국가의 가족정책의 지향성은 여성의 고용 및 여성 집단의 계층 간 고용의 불평등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사회가 가진 돌봄 레짐의 '차이'와 '변화'가 여성 내부 집단별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비교 및 국가 내부의 레짐의 변화에 따른 비교를 시도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 19차까지의 자료와 독일 사회경제패널조사(GSOEP)의 37차 자료까지의 자료 등을 활용한다. 사회의 레짐 변화에 따른 분석을 위해 독일은 1기: 1993~2006년, 2기: 2007~2011년 출생 자녀, 한국은 1기: 2001~2008년, 2기: 2009~2012년 출생 자녀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엄마의 12~48개월 기간의 고용상태에 여성 본인 학력, 배우자 소득 등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명시적 가족주의 국가인 독일 엄마가 암묵적 가족주의 국가인 한국 엄마보다 학력에 따른 계층 선택적 고용비용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탈가족화 정책 투입으로 인해 독일은 여성 학력별 고용 불평등은 낮아지는 반면 2009년 이후 탈가족화 수준을 더욱 약화시켰던 한국은 학력에 따른 고용 비용 격차가 높아졌다. 배우자 소득은 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일수록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은 낮아지며, 제 1기간은 독일이 한국보다 강하며, 제 2기간 한국은 이러한 경향이 만 3세이후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은 이러한 경향이 약화되는 동시에 고소득 배우자를 둔 여성은 전일제보다 파트타임 고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소득에 따른 영향력의 방향성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 레짐별 정책이 여성 고용 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 계층의 불평등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것이며, 돌봄정책의 탈가족화 수준과 가족화 수준의 약화로 인한 부모의 돌봄 선택권의 약화가 결국 젠더 평등에도 긍정적인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용어 : 기혼여성, 고용 불평등, 돌봄 정책

1. 서론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 개입의 방향과 내용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돌봄 수행에서의 젠더 평등 지향점을 나타내며, 이는 어떤 복지국가를 실현하는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가 정책은 '선호'를 가지고 복지 생산 주체인 시장과 가족에 개입하고, 그 사회가 가진 규범과 제도적 맥락 위에서 이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가족정책은 돌봄 역할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그 사회의 규범 하에서 전반적인 젠더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지, 혹은 기저에 젠더 불평등을 받아들이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만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낳는다.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다양한 돌봄 정책은 각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필요와 이상(ideal)에 기반해서 시행되기 마련이다(Lokteff 외, 2012; Leitner, 2003, 2017 등). Lokteff와 Piercy(2012)는 이러한 정책의 국가적 선호를 돌봄 이상(ideal)으로 표현한다. 각 국가의 돌봄 이상(ideal)은 정책 결정으로 실행되고 정책은 역사적 맥락, 사회정치적 분위기, 국가의 도덕적(moral) 지향과 결합된다. 즉 각 국가의 돌봄 이상은 국가의 현재 가치 시스템의 표현이며 따라서 자녀 돌봄 및 가족 정책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특히, 국가별 가족정책에 대한 지향성은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엄마를 가족 안에 머물게 하거나,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혹은 그녀들에게 자율적인 선택의 권리를 준다. 즉 가족정책의 지향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족정책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지향점의 차이는 기존의 복지국가 레짐 유형으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¹⁾. 그래서 이러한 가족주의 정책의 다양성은 돌봄 기능을 가족 내부로 끌어들이지(가족중심주의), 사회화 또는 시장화 할지(탈가족중심주의)에 대한 차이에 따라 별도의 '돌봄 레짐'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예가 Leitner(2003)로서 가족화와 탈가족화 두 차원의 강약에 따라 탈가족주의, 선택적 가족주의, 명백한 가족주의, 암묵적 가족주의로 구분하였다.

돌봄 레짐은 젠더 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삶'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평가하는 규범적 프레임은 소득자-돌봄 모델(earner-carer model)이다. 그 사회의 모델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유급 노동에 임하게 되며, 무급 돌봄에 있어 부모 두 사람은 직접 자녀를 돌볼지, 돌봄 대안을 찾는지 선택하게 된다(Gornick and Meyers, 2008). 돌봄 정책 중에서 돌봄 서비스 공급은 직접 젠더 평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의 기회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젠더 평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Leitner, 2017; Esping-Andersen 2009). 유급 부모휴가 정책이 젠더 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의 지향과 (그에 따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휴가기간, 자격, 남녀 간 급여 차이 등)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따라 엄마가 제공하는 돌봄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고, 젠더 평등적 소득자-돌봄 모델을 강화할 수도 있다. 요약하면, 한 국가의 돌봄 정책 강화는 레짐 차이에 따라 젠더 간 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전통적 성별분업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 간 돌봄 레짐 차이는 여성의 계층 간 불평등성에도 영향을 미친다(Esping-Andersen 2009, Korpi et al. 2013??). 이는 (돌봄 레짐 차이에 따른) 돌봄 정책 내용 차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배우자의 소득수준 등 상이한 가족특성이 기혼여성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Steiber and Hass, 2012; Liechti, 2017). 이러한 기혼 여성의 계층 선택적인 고용은 가구의 소득 분포를 바꾸게 되어 젠더 평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Leitner, 2017; Esping-Andersen 2009). 결국 돌봄 레짐은 젠더 간, 젠더 내 평등, 나아가 사회 전

1) 기존의 복지레짐은 Esping-Andersen(1992)에 의해 자유주의/사민주의/보수주의 국가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으며, 가족의 역할 간과를 인정하면서, 탈가족화/가족중심주의/탈상품화가 복지국가 유형분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Esping-Andersen, 1999). 하지만, 여전히 돌봄의 공급 주체만으로 복지레짐을 규정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좀더 상세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Leitner, 2003; Lahmann&Zagel, 2016)

반의 평등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돌봄 레짐의 ‘차이’와 ‘변화’가 여성 내부 집단별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비교 및 국가 내부의 레짐의 변화에 따른 비교를 시도한다.

독일과 한국의 복지 체계를 비교하면 상이성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보수주의적 체계에 속하지만, 독일은 좀 더 조합주의적이며 한국은 좀 더 자유주의적이다. 자녀 돌봄 정책만으로 한정하여 한국과 독일의 정책을 가족화·탈가족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두 국가 모두 탈가족화는 낮은 수준의 복지 레짐을 보이지만(정재훈 외, ; Saraceno, 2016; Leitner, 2013), 가족화 수준은 다소 다르다. 독일의 가족화 수준은 매우 강해 자녀 돌봄의 책임을 가족으로 돌리는 정책을 실행하였으며, 한국은 가족화 수준이 낮지만 주로 시장을 통한 탈가족화가 이루어졌고 이 또한 성과가 높지 않아 탈가족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두 국가는 최근 10여년 간 정책 흐름이 바뀌었다. 독일은 2007년 시행된 부모급여(Elterngeld) 정책의 변화와 보육서비스의 획기적 확대를 통해 돌봄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졌고 스웨덴 등의 시민주의 국가들과 동일한 선택적 가족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한국은 육아휴직 등의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탈가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2008년 보수정부 시기 이후 오히려 정책이 윤택하면서 탈가족화가 약화되고, 암묵적 가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연구는 두 복지 국가의 돌봄 레짐의 차이와 그 변화에 초점을 두고, 레짐의 형태별로 여성 내부의 불평등성의 계층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복지 레짐의 구분 및 복지 레짐별 젠더간·젠더내 불평등의 기존 논의를 보이고, 3장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돌봄 정책 레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개괄할 것이다. 3장에서는 특히 두 나라의 돌봄 정책의 투입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적절한 지표를 통해 검토해본다. 4장은 연구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실증분석 과정을 설명하고 이어 분석결과를 보이고 결과의 의미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정책 레짐 유형화

자녀 돌봄 정책은 시간권리, 현금권리, 돌봄서비스 권리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시간권리는 부모에게 노동 시장에서 일할 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아이를 돌볼 시간을 주어 부모의 돌봄 권리를 지원한다. 현금권리는 부모가 일을 한시적으로 쉬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줌으로써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 반면 돌봄서비스의 공급은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돌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Leiter, 2017). 시간권리와 현금권

리를 지원하는 정책은 부모가 가족 내부로 들어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런 유형의 정책은 가족화 효과를 가지게 되는 반면, 돌봄 서비스 공급정책은 가족의 돌봄 의무를 ‘사회화’ 또는 ‘시장화’ 하게 되므로 탈가족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돌봄 정책 레짐은 가족화와 탈가족화의 조합을 상정하며, 그 정도에 따라 레짐이 구분된다.

Leitner(2003)는 가족화와 탈가족화의 강약에 따라 네 가지 돌봄 이상 유형(ideal type) 을 구분했다.

<표 1> 가족화-탈가족화 조합에 따른 레짐 분류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	
		강함	약함
가족화 (Familialization)	강함	선택적 가족주의 (Optimal familialism)	명시적 가족주의 (Explicit familialism)
	약함	탈가족주의 (De-familialism)	암묵적 가족주의 (Implicit familialism)

자료: Leitner(2003).

명시적 가족주의는 자녀 돌봄에서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는데, 공공 및 시장 주도 돌봄 공급의 부족, 명시적이며 강한 가족화 지향성으로 인해 가족, 특히 엄마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호주, 이탈리아, 독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 국가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현금 급여를 지급하지만 공공 보육 서비스 공급 비율은 매우 낮다. 이들 국가의 가족정책은 엄마가 돌봄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적 성별 분업 젠더 체제를 강화한다(Leitner, 2003).

선택적 가족주의는 돌봄 정책 지원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따라서 가족은 돌봄에 대한 의무를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돌봄 시간에 대한 권리는 명시적 가족주의와 선택적 가족주의 모두에서 지원되지만, 선택적 가족주의는 가족이 돌보지 않을 권리도 함께 지원한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속하며 자녀 돌봄에 대한 급여가 충분히 지급되는 한편 폭넓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가족은 돌봄 권리 및 돌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러한 돌봄 정책은 가족이 돌봄 기능을 수행할 것, 또는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의 젠더 관계 평등에 기여한다(Leitner, 2003).

암묵적 가족주의는 가족정책이 가족의 돌봄 기능 또는 탈가족화 모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부재한 가족은 암묵적으로 일차 돌봄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 스페인, 한국, 일본 등의 국가가 이러한 레짐으로 분류되는데, 공공 보육 시설이 부족과 육아휴직에 대한 현금 지원의 부족이 특징이다. 이 국가들의 가족 정책은 명시적으로 가족의 젠더 관계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무개입 자체가 엄마의 돌봄 책임을 암묵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젠더화를 더욱 강하게 한다(Lekteff-Piercy, 2012).

탈가족주의는 약한 가족화와 시장 및 공공의 돌봄 서비스는 지원하나 가족의 돌봄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강한 탈가족화를 특징으로 한다. 가족의 돌봄 권리는 지원되지 않으나 가족 돌봄 책임

은 부분적으로 경감된다. 영국 등의 국가가 포함되며 공공 보육 서비스는 폭넓게 공급되나 육아 휴직 급여는 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국가의 돌봄 정책은 젠더 중립적이지만, 공공 보육 서비스의 공급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일정 부분 젠더 평등에 기여한다.

독일은 Leitner(2003)의 가족주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는 명시적 가족주의 유형에 속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독일은 가족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선택적 가족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Leitner, 2017).

한국의 경우,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의 진보 정권은 탈가족주의 정책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성별화되어 작동하였으며, 이후 보수 정권에서는 (재)가족화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전윤정, 2015; 이진숙·박진화, 2015). 이에 따라 한국은 암묵적 가족주의(Lokteff&Piercy, 2012; 전윤정, 2015)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향은 2009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즉 2009년 이후 보육서비스 공공화를 축소하고 민간 시설 중심의 체제 전환, 보육서비스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비용 중심의 바우처 제도 도입, 가정양육수당의 확대 등을 통해 '시장화', '(재)가족화'를 지향하며 더욱 암묵적 가족주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전윤정, 2015).

결국, 분석의 제 1기(한국: 1999~2008년 출생 자녀, 독일: 1993~2006년 출생 자녀)는 한국은 암묵적 가족주의, 독일은 명시적 가족주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두 국가의 가족 정책 레짐은 가족을 주 돌봄자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가족의 돌봄 공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면, 한국은 가족의 돌봄 책임은 돌봄 대안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분석의 제 2기(한국: 2009~2013년 출생 자녀, 독일: 2007~2011년 출생자녀)는 한국은 더욱 암묵적 가족주의로의 전환, 독일은 선택적 가족주의를 향한 움직임 보였다. 한국은 공적 돌봄 서비스의 여전히 부족상태와 자녀 돌봄 가족 정책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책임이 더욱 가족에게 향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획기적 확대, 부모휴가 기간의 단축과 탈가족화 강화 정책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선택권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통일 이전 동독과 서독의 가족 정책 레짐과 정책 내용은 서로 달랐다(Gundula·Irina, 2017). 동독에서는 이인 소득자 모델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것을 당연한 규범으로 여겼으나, 서독에서는 여성은 가족, 남성은 부양이라는 이인 소득자 모델을 규범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독일의 돌봄 레짐 변화 연구에서 동·서독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면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서독의 보수주의적 레짐, 그리고 시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인한 가족정책 레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2. 젠더 불평등성

여성 고용은 젠더 평등의 하나의 지표로 이해된다. 특히,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사회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지속적 고용의 선택은 몇몇 독립변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경제적 자율성은 가족 내 여성으로 하여금 독립적 주장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Hobson, 1990). 시장임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가족은 가구 내 소득자의 실업이나 질병에 매우 취약해짐에 따라 여성 고용의 불평등성은 사회 불평등에 있어서도 의미를 갖게 된다.

게다가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은 일련의 경력 패들티로 작동하게 되어(Aisenbrey et al. 2009; 민현주; 2011) 여성의 임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정준, 2010; 최효미,). 이때, 여성 본인의 인적 자원과 배우자 자원은 여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는 높은 교육수준과 높은 소득의 기대를 가진 여성들이 자녀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빠르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Gustafsson(1996)는 이러한 출산 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주는 여성의 인적 자원은 남성양육자모델의 사회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고용이 명시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사회(예로, Leiter의 분류에서 약한 탈가족화 수준을 가진 사회)에 속한 여성은, 본인의 인적 자원이 높을수록 기존 젠더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배우자 자원은 여성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x 외, 1998; 장지연, 1997; 김지경·조유현, 2003). 배우자 자원의 영향력의 크기는 엄마의 고용에 더 적은 지원을 하는 남성 양육자 레짐에서 더욱 커진다(Liechti, 2017). 즉, 낮은 수준의 돌봄 서비스 공급,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시스템, 모성 고용에 대한 관습적 태도를 가진 사회 내 엄마는 배우자 자원이 높을 때, 그렇지 않은 사회 내 엄마보다 더욱 가족에 머물게 된다. Leitner의 유형에 따르면 배우자 자원의 이러한 영향력은 탈가족화가 낮은 정책 맥락에서 크게 발생한다. 배우자의 경제적 자원은 출산 후 경력단절 엄마의 전일제 복귀를 늦추며(민현주, 2011), 파트타임 복귀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oherz, 2014). 또 다른 연구는 엄마의 풀타임, 파트타임 일자리와 배우자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했으나,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일자리는 배우자의 자원에 영향을 덜 받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줄어든다(Konietzka and Kreyenfeld 2010).

게다가 제도적 맥락이나 정책이 동일한 각 사회 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시장 참여결정이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Korpi et al. 2013).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개인 단위의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여성 고용에 있어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배우자 소득의 영향력이 여성 내부의 각 집단별로 다른 영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Steiber and Haas 2012; Liechti 2017).

요약하면, 연구들은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로 인해 본인의 교육수준과 출산 후 노동시장 참여 간에는 정(+)적 영향을 갖는다. 반대로 배우자 소득은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간 부(-)적 관계를 갖는다. 이는 추가소득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분석의 첫 번째 기간 탈가족화 수준이 독일과 한국은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이고, 한국은 탈가족화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초기 단계만큼 시장에서 크게 작동되지 않은 한계로 엄마의 고용은 두 사회 내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요인에 대한 영향력은 두 국가에서 모두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부모 휴가(육아휴직)나 급여가 가구 소득·교육 수준별 여성 집단에 엄마 고용의 인센티브를 변화시킨다면, 엄마 집단별 고용에 있어 사회 제도 맥락은 조절효과로 작동될 것이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높은 교육수준 엄마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가족정책 레짐의 영향을 덜 받고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인다. 즉, 교육수준별 여성 집단의 국가 간 고용의 차이

는 대부분 저학력 여성의 고용차이로부터 비롯된다. 특히, 자산 대비한 급여지급은 저학력 여성들을 더욱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여성 학력별 고용의 차이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독일이 한국의 엄마보다 학력별 계층에 따른 엄마 고용의 불평등이 분석의 이전기간에 더욱 클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분석의 다음 기간에는 독일은 이러한 계층간 고용불평등은 현저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탈가족화의 약화로 인해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배우자 소득의 효과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있다. 독일은 이전 기간 자산대비급여 이었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의 엄마는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이 떨어진다. 또한, 고소득 가구의 엄마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 없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 계층 간 엄마 고용의 불평등성은 독일이 한국보다 낮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수준의 차이는 이후 기간에 줄어들 것이다.

가설 1: 분석의 제 1 기간에 여성의 교육 수준에 따른 엄마 고용의 계층 간 불평등은 독일이 한국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분석의 제 2 기간에 엄마 교육 수준에 따른 엄마 고용의 계층 간 불평등성은 독일은 현저히 낮아지고, 한국은 이전 기간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분석의 제 1 기간에 배우자 소득에 따른 여성 고용의 불평등성은 한국이 독일보다 더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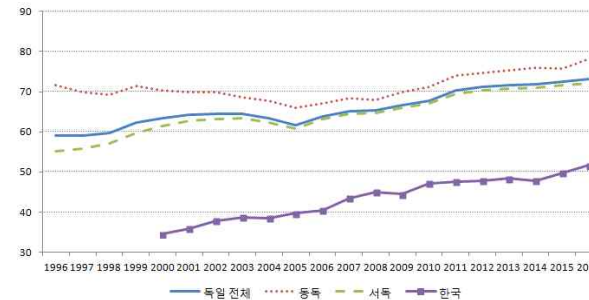
가설 4: 분석의 제 2 기간에 배우자 소득에 따른 여성 고용의 불평등성은 한국과 독일 두 국가 모두 이전 기간보다 줄어들 것이다.

급여가 독일은 제 1기간(1993~2006년)에 2년 동안 지급되었고, 한국은 2007년 출생 자녀까지 출산 후 출산 전후 급여를 포함하여 만 1세까지, 월 20만원~월 50만원의 정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2년 사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부모휴가는 한국은 출산 후 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1년, 독일은 출산 후 최대 3년이기에 때문에 출산 만 36개월이 넘어선 시점에서는 두 국가 간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분석 2기는 독일은 자산대비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본인 학력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 또한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자녀 연령의 확대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와 휴가가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1년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양육수당 도입으로 탈가족화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에 따라, 본인 학력에 따른 영향력은 전 기간에 비슷하게 퍼질 수 있으며 학력 계층간 영향력은 더욱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정 양육 수당은 2009년 도입이 차상위 계층 이하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러한 기조는 2013년 전계층, 5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즉, 초기엔 특히 저소득 가구의 가정 양육을 지지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분석 2 기간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가 많고, 또한 양육수당 자체의 성격이 가족 돌봄을 지원하므로, 배우자 소득의 계층간 불평등성은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저소득 가구의 엄마도 가족으로, 고소득 가구의 엄마는 기존 이론에 따라 가족으로). 또한, 2013년 확대 전까지 만 2세 아동까지가 지원대상이었기 때문에 만 3세(36개월) 이후 기간 배우자 소득의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III. 국가별 정책레짐의 전개와 변화

두 국가의 가족 정책 변화 과정에서 주요 성과를 우선 살펴보도록 한다.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한국: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독일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60%대에 머물러 있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73.1%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유자녀 여성 고용률 통계는 최근 기간만 생산되었기 때문에, 노동패널을 활용에 취업자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이후 증가세가 완화된 이후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2014년 54.5%, 2015년 55.5%²⁾로 독일의 2015년 7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유자녀 여성 고용률 및 취업자 비중 변화



자료: 1) Erwerbstätigenquoten der 15- bis unter 65-Jährigen mit Kindern unter 18 Jahren: Früheres Bundesgebiet/Neue Länder, Jahre, Alter des jüngsten Kindes, Geschlecht

2) 한국 노동패널 2000~2016년 자료를 이용한 저자 계산

주: 1)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기준

2) 독일은 고용률, 한국은 취업자 비중임.

1. 독일

“Kinder, Küche, Kirche(자녀, 주방, 교회)” 독일 사회의 오래된 이 격언은 독일 엄마의 책임이 가구 내 무급노동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독일 여성의 일과 가족의 조화는 전통적 성별 노동분업을 강화하는 정책(관대한 출산휴가(최대 3년), 일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관대한 세금공

2) 『2016년 일·가정양립 지표』, 통계청

제, 일하는 남편의 일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국민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좌절되었다³⁾. 본질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의 정책은 여성이 집에 머물며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물질적 지원을 엄마들에게 지원하였다. 특히 과거 서독의 노동시장정책, 정부정책, 사회의 규범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요소들이었다(Adema외, 2017). 동서독의 여성 노동시장은 그 특성이 다르다. 통일 이전 서독은 모든 정책 투입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동독은 자녀를 가진 여성들의 짧은 엄마 휴가와 정부 보조의 데이케어 시설을 많은 가족이 활용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빠르고 완벽한 복귀를 장려하였다(Trappe&Gornick, 2004; Schober&Spiess, ; 황규성,). 1990년대에서 2000년 중반까지 아동수당(kindergeld)⁴⁾은 여성이 일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었고, 부모휴가정책 현재보다 훨씬 더 관대하였다. 부모휴가정책의 경우, 1993년 이후 일자리가 보호된 휴가 기간은 36개월이었고, 자녀양육급여는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자산 대비로 결정되었다. 2001~2006년 동안 수당자격을 가진 부모는 1년 동안만 높은 금액을 받거나, 2년 동안 낮은 수준의 금액을 선택할 수 있었다. 1993년 이후 부모 휴가는 3년으로 유지되었고, 자산대비 양육수당은 이전의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최대 2년 지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독에 관한 첫 번째 기간은 마지막 출산 자녀의 출산 연도가 1993년~2006년인 자녀를 대상으로 엄마의 고용상태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당시의 독일 부모휴가정책은 명시적 규범으로는 젠더 중립적(엄마, 아빠 모두 자격)이었으나, 당시 서독 사회의 규범, 분절된 노동시장, 낮은 수준의 양육수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젠더화 되었다(Morgan and Zippel 2003, Steiber and Hass 2010). 이 기간의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엄마들을 3년 이상 경력 단절을 겪게 함으로써 파트타임 근로로만 돌아오게 했다는 지적이 많다(Frodermann, Muller and Abraham, 2013).

2000년대 중반 이래 독일은 낮은 출산률, 노동력 부족 및 유럽 연합의 젠더평등 가치 지향에 직면함으로써, 2007년 '지속가능한 가족 정책' 모델로의 대대적 전환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는 자녀를 둔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자녀를 둔 가족에 현금 급여를 제공하기 보다는 조기 아동 보육 및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전 정책 레짐과 단절하여 이중소득자 가족모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투입이 이루어졌다. 2007년 당시의 부모 휴가의 유급휴가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였고, 많은 아빠가 유급휴가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부모수당은 더 이상 자산 대비가 아니라 소득 관련 수당으로 규정되었고, 수급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되었다. 부모가 모두 휴가를 갈 경우 두 달의 휴가를 더 줌(결국, 최대 14개월 수급기간)으로써 아빠의 부모휴가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2005년 연방 법률 제정(Tagesbetreuungsbausbaugesetz)이래 한부모나 부모가 일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길 원하는 경우 3세 미만 자녀가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등록될 기회를 보장하였고, 2008년 두 번째 연방법률(Kinderforderungsgesetz) 제정을 통해 2013년 독일은 1세 이상 모든 자녀가

3)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7/01/german-childcare/512612/>

4) 아직까지도 아동수당제도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구에 세금환급형태(tax refund)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권리를 가지게 됨을 규정하였다. 저렴하고 보편적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시 독일 정부의 정책은 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림 2> 보육시설 이용률- 독일

[단위: %]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2016), Statistiken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nder und tätige Personen in Tageseinrichtungen und in öffentlich geförderter Kindertagespflege

ECEC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정책을 통해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2005년 GDP 대비 0.37%에서 2016년 0.58%까지 끌어올리며 OECD 평균 0.73%에 접근중이다. 이러한 공공 보육서비스의 확대는 보육시설 이용률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왔고, 서독지역 2007년 9.8%에 불과하던 3세 미만 보육시설 이용률이 2016년 28.1%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림2>에서도 확인되듯 동서독의 성역할에 대한 이상의 차이는 공식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도 차이를 보여 서독은 여전히 동독의 가구보다는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많다⁵⁾(Schober-Spiess, 2015;Korf-Zabel, 2017). 3세 미만 보육시설 이용률 또한 동독지역은 50%가 넘고 있으나, 서독지역은 그 반에 못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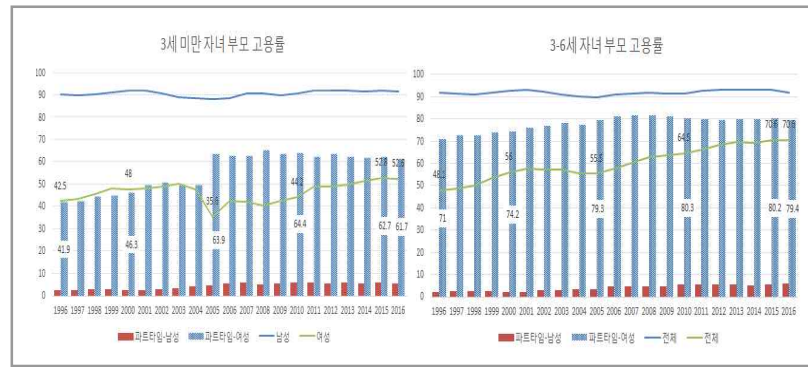
2000년 후반기의 제도 변화는 자녀가 있는 서독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보였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2006년 61.2%에서 2013년 69%로 크게 늘었다⁶⁾.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용률을 상세히 살펴보면<그림 3>,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1996년 42.5%에 불과하였고 이후 정세와 감소 기간을 거쳐 2008년 40.5%까지 감소하였다가 2015년 52.8%, 2016년 52.6%까지 증가하였다. 3~6세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1996년 48.1%이후 다소 증가했다가 2005년 55.6%까지 떨어진 이후 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70.6%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들 취

5) 이러한 동서독 사회규범과 돌봄 이상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서독 유자녀 가구의 엄마의 고용여부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이 독일의 가족 정책 레짐 변화에 따른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를 측정하는데 용이하며, 엄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6)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업모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는데, 3~6세 자녀의 엄마는 파트타임 근로 비율이 1996년 7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80%를 넘어서 2015년 80.2%, 2016년 79.4%에 이르며, 3세 미만 자녀의 엄마는 더욱 증가폭이 심하여 1996년 41.9%에서 2005년 63.9%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60%가 넘는 비율로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독일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도 2015년 3세 미만 자녀의 부모의 아버지의 83%, 서독 어머니는 10%(국제 통계 기준으로 8%)만이 전일제 근무를 하며, 동독 어머니의 경우 약 21%가 전일제로 근로하고 있음을 밝혔다⁷⁾. 결국, 서독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는 아빠와 달리 대부분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후반부터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자녀 연령별 부모의 고용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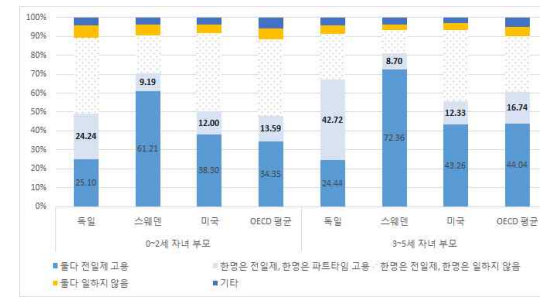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이러한 엄마의 파트타임 근로의 증가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일인 소득자 모델을 지향했던 독일 노동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0~2세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전일제-파트타임 커플의 조합이 높아져 24.2%(OECD 평균 13.6%)이며 3~5세 자녀 부모는 더욱 이 비율이 높아져 42.7%로 일인 소득자 가구를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7/03/PE17_077_122.html

<그림 4> 유자녀 커플의 고용 형태(2014)- 독일 전체



자료: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LMF2.2 Patterns of employment and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for couples with children

2. 한국

한국은 2001년 11월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당시 산전후 휴가기간의 보장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60일은 전기와 동일하게 기업부담으로 나머지 30일은 국가가 분담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의 본격적인 제도도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기존 육아휴직이 무급으로 43주였으나, 당시의 법률 개정으로 동기간 20만원의 유급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의 본격적인 제도형성기로 바라볼 수 있다. 이후, 현금 급여는 2002년 월 20만원, 2003년 월 30만원, 2004~2005년 월 40만원, 2007~2009년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되었으며, 2011년 40%의 정률제(상한 100만원)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2006년부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로 육아휴직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결국 2008년부터 기존 만 1세 미만 자녀에서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가 이루어졌고 1년의 유급 혜택은 유지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7년 현재 휴직기간 중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원(상한액 150만원)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육아휴직의 활용이 여성에게만 향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보다는 엄마조차도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장 상황, 사회 인식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기 때문에⁸⁾ 여성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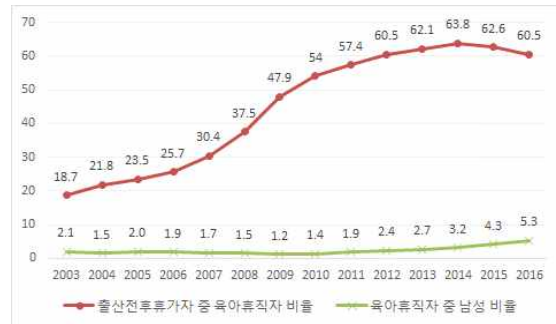
8) 2008년 자녀 연령 확대 당시 노동부가 발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녀대상 연령 확대 내용을 포함한 「육아휴직 활성화방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육아휴직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동자가 육아휴직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조치로 실제로 2008년 1월 출생 자녀부터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이 2007년 12월 41.4%에서 2008년 1월 48.8%로 급증하는 결과를 보였다(윤자영, 2017). 2008년 1월생 자녀가 만 3세 되었을 때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당시 확대 정책은 육아휴직의 자녀 대상연령 확대 정책이 가질 수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부정적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010년 2월부터 기존 만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로, 2014년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였다. 2010년 개정에서는 2008년 출생 자녀 이후로, 2014년 개정에서는 2008년 이전 출생 자녀에도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조건이 성립하면 육아휴직을 1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는 만 6세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2017년부터는 만 8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지속적 자녀 연령 확대가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은 늘렸으나, 장기적인 동일 직장 복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김정호, 2012)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윤자영, 2014).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더불어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 제도 도입 이후부터 남성도 1년의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했으나, 거의 활용 인원이 없었다.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 도입을 통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면 첫 1달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지원을 3개월로 늘렸다. 최근 남성의 급격히 늘었다고는 하나 휴직자 대비 남성 비율은 2016년 5.3%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5>.

<그림 5> 출산전후 휴가자 중 육아휴직자 비율 및 남성 활용 비율



자료: 윤자영(2017)에서 인용 및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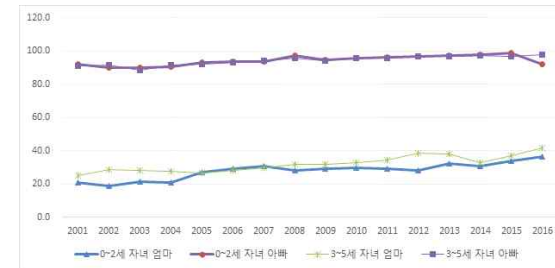
한편, 2009년 9월부터 (재)가족화의 대표적인 정책인 가정양육수당이 제도화되고 확대되었다. 2009년 7월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만 0~1세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1년부터 지원연령 만 2세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12년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는 등록장애아동은 취학 전까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금급여로 지원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는 무관하게 보육시설 미 이용시 지급됨으로써 '0~2세의 경우 가정 보육을 권장(관계부처 합동, 2012)'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화 지향 정책으로 평가된다(전윤정, 2015; 송다영, 2014). 양육수당의 가족화 지향성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며(윤미례·김태일, 2017), 계층에 따라 보육과 교육 기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송다영, 2014; 윤홍식, 201).

결국, 제도 도입 초기에는 육아휴직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 투입이 이루어졌고, 이는 여전히 전통적 성별분업 이념 하에서 노동시장에 있는 엄마들이 평등한 노동권을 갖도록 하여 젠더 간 평등을 이룰 것이라는 정책 레짐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의 확대, 가정양육수당의 도입, 아버지 휴가 촉진에 대한 정책 부재를 담은 2009년 이후의 가족정책 레짐은 가족화를 위한 대안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자녀 엄마를 가족의 품으로'이라는 돌봄 이상 지향과 '평등한 노동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념 지향을 모호하게 합치면서 정책 레짐을 더욱 암묵적 가족주의적으로 만들었고, 여성에게는 '당연해야만 모성'과 경제활동 사회적 주체라는 역할 갈등의 심화를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투입 기간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취업자 비중을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엄마의 취업 비중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1년 0~2세 미만 자녀 엄마는 21.2%에서 2016년 36.6%까지 늘었으며, 3~5세 자녀 엄마는 25.2%에서 2016년 41.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6> 유자녀 부모의 연령별 취업자 비중 변화



자료: 한국노동패널

한편, 2000년대의 보육시설 정책이 명시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제 1차 중장기 보육계획의 『새싹 플랜』의 발표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정책은 민간 위주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

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시설의 30%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재원부족을 이유로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송다영, 2014). 국공립 시설 확충 대신 정부의 선택은 민간보육시설의 평가·관리를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추진하였으며, 당시의 정책은 정부평가인증제를 통해 민간 보육시설을 관리하며 보육료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였다. 2007년 이명박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기존의 민간시설 활용에 보육료 지원 방식을 강화하였다. 당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부모에게 직접 현금 급여 성격이 강한 바우처를 제공하고 부모가 보육 시설을 선택·지불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책 선회는 돌봄이 시장화를 더욱 강하게 규정하고 돌봄의 책임을 부모의 몫으로 암묵적으로 돌려 탈가족화를 약화시키는 방향성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백선희, 2008; 송다영, 2014).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보육의 시장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0~2세 보육률은 2012년 62.9%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폭이 작아져 2015년 65.3%의 2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3~5세 자녀 또한 보육시설의 이용이 2015년 89.8%에 이르고 있으나, 6세 미만 자녀의 민간 보육시설 이용률이 2002년 64.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5.4%에 이르러 대부분의 자녀가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즉, 한국은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변화폭만 살펴보면, 탈가족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양질의 공적 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 정책 또한 이를 향하지 않아 시장화, 계층화가 심해지고 현실이다.

<그림 7> 보육시설 이용률- 한국



자료: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SubCont, 연령 (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각 연도

주: 연령별 인구 대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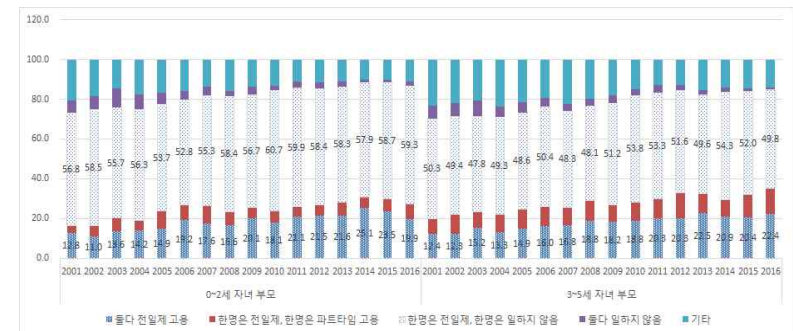
이러한 정책흐름과 변화 과정에서 독일은 일인 소득자 모델에서 이인 소득자 모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은 유자녀 커플의 고용형태에 대한 공식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노동패널의 CNEF 일관적 기준에 의한 전일제, 파트타임 기준으로 유자녀 커플의 고용형태의 변화를 시계열로 확인 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0~2세 자녀의 커플의 1인 소득자 가구가 2001년 56.8%에서 2016년 59.3%로 크게 변화없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3~5세 자녀 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2001년 50.3%에서 2016년 49.8%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둘 다 전일제로 일하는 커플은 2001년 0~2세 자녀 부모 12.8%, 3~5세 자녀 부모 12.4%에서 2016년 0~2세 자녀 부모 19.9%, 3~5세 자녀 부모 22.4%로 증가하였다. 비율의 소폭 증가는 2000년 후반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된 모습이다.

앞서 살펴본 OECD 유자녀 커플의 고용형태 비율 평균은 0~2세 자녀 부모 둘 다 전일제 34.3%, 한명 전일-한명 파트타임 13.6%, 한명만 전일제 40.5%, 3~5세 자녀 부모 둘 다 전일제 44.0%, 한명 전일-한명 파트타임 16.7%, 한명만 전일제 29.4%였던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은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이인 소득자 비율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인 소득자 중심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8> 유자녀 커플의 고용 형태 변화- 한국



자료: 한국노동패널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의 구성

본 분석은 독일과 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며, 국제의 여러 패널의 중요 변수들을 국제비교를 위해 모아놓은 Cross National Equivalent File(CNEF) 자료의 몇몇 변수를 활용한다.

독일은 사회경제패널조사(German Socio-Economic Panel, GSOEP)를 활용한다. G-SOEP은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소(DIW 베를린)가 수행하는 조사로 1984년 조사를 시작하여 2015년 32차 조사까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조사에는 노동시장 참여 현황, 일자리 관련 변수, 가구와 개인의 기

본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미시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독일 표본은 1993년~2006년 태어난 막내 자녀의 엄마와 2007~2011년 태어난 막내 자녀의 엄마의 마지막 출산 후 12~48개월의 고용 및 가구 특성, 개인 특성 변수들을 중심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두 개의 셋트로 구성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서독 거주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즉, 첫 번째 표본은 1994~2010년(6~32차) 조사 차수가 포함되며, 두 번째 표본은 2011년~2015년(33~37차) 조사차수가 포함된다. 자녀 출산 후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을 관측하기 때문에 조사가 실시된 조사월수에 따라 당시의 자녀 개월 수가 조사년도로만 계산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자료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표본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출생 자녀의 경우 2010년 4월에 엄마에 대한 패널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첫 번째 표본에 포함되게 되고 2010년 7월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표본에 포함된다⁹⁾. 분석은 변수들의 결측이 없고, 막내 자녀 출산 후 12~48개월 각 세 기간동안 응답이 모두 이루어진 케이스만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표본에 포함하기로 한다.

1993년 자료부터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각 1,168개의 관측치, 2007년 자료부터는 982개의 관측치가 확보되었다. 하지만, CNEF의 독일 근로소득 변수가 작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는 한계가 있어¹⁰⁾ 당해 년도의 작년 근로소득을 한칸씩 미루어 전년도 데이터에 붙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최종 관찰년도인 2015년도에 보고된 근로소득은 2014년도 수치이기 때문에 2014년 데이터로 활용함에 따라 데이터의 숫자가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다¹¹⁾. 조정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 수는 1차 기간 933개, 2차 기간 683개이다¹²⁾.

한국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19차 조사의 학술대회 이전까지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표본수는 2014년 추가표본까지 포함하여 6천여 가구가 유지되고 있으며, 독일의 GSOEP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가구의 일반 특성, 일자리 변동 및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패널의 첫 번째 데이터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1~2008년 동안의 각 가구 내 막내 자녀 출

생 기준 이후 엄마의 출산 이후 12개월~48개월까지의 취업유무를 관측한다. 두 번째 표본은 2009~2016년 동안의 가구 내 막내 자녀 출생을 기준으로 엄마의 출산이후 48개월을 관측한다. 사실상 두 번째 표본에는 출산 이후 최소 36개월 시간이 필요하므로 2013년도 출생자녀까지만 포함되게 된다. GSOEP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의 엄마를 기준으로 분석에 활용한다.

첫 번째 표본은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각 1,022개의 관측치, 두 번째 표본은 각 개월 수 단위별로 484개의 관측치가 확보되었다.

2. 분석 변수 및 일반적 특성

분석의 종속변수는 엄마의 당해 연도 취업 유무이다. 이는 CNEF 데이터의 당해연도 취업유무(0/1)를 분석에 활용한다. CNEF의 취업여부 변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트 타임(받은 임금이 있고, 년 기준 최소 52시간 이상 1,820시간 미만 일한 경우), 전일제(받은 임금이 있고, 주당 평균 35시간, 년 기준 1,820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구분하고 이외의 변수를 취업안함으로 설정한다. 전술하였다시피 독일은 정확한 고용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올해 조사시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파트 타임 이상 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취업안함으로 설정한 취업유무 변수가 필요하다. G-Soep은 지난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CNEF 근로 관련 변수를 보고하기 때문에, 올해의 변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미루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비교를 가능케 하므로, 이를 조정하고 변수들 결측 처리를 한 이후 1,168개의 관측에서 933개의 관측으로 줄어든다. 다만, 1,168개의 관측치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큰 차이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노동패널은 현재 근로시간 및 소득 기준으로 CNEF 데이터를 보고하므로 이러한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분석의 독립변수는 엄마의 교육수준, 나이, 자녀수, 막내 자녀 나이, 막내 자녀 출생 년도, 배우자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이다. 교육수준 및 소득 관련 변수는 여러 패널 데이터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NEF의 변수를 활용하며, 나머지 변수는 독일의 G-SOEP, 한국의 노동패널의 변수를 활용한다.

엄마와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인터뷰 당시의 교육정도이며, 구분은 낮음(중졸 이하 수준), 중간(중졸 초과 고졸), 높음(고졸 초과)¹³⁾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노동패널의 경우, CNEF에 제공되는 낮음 수준의 학력은 중졸 이하 중간은 고졸, 높음을 고졸 초과로 설정함으로써, 전체 모집단 구성에서는 각 범주별로 일정 비율을 유지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는 20~40대 연령대의 비율이 전체 비율은 전체 모집단 비율과 상이해진다. 결국 중졸 이하 학력 수준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한국의 노동패널은 낮음은 고졸 이하, 중간은 전문대졸 이하, 높음은 대졸 이하로 구성함으로써 독일의 학력 수준별 비율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비교의 정합

13) 독일의 경우 낮음은 중등 교육 이하, 중간은 고등교육 이상(Upper secondary school, specialized short-course higher, Apprenticeship, Specialized vocational school), 높음은 고등학교 초과 수준(School of health care, college of higher education, post-secondary technical College, Technical university, Civil service training)을 말한다.

9) 이러한 이유로, 12개월부터 관측을 시작하므로 2008년 조사 자료도 일부 두 번째 표본에 포함되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엄마가 동시에 두 표본 모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각 기간에 한정하여 자료 모집단을 만들고 마지막 출산을 관측한다.

10) G-Soep은 개인 데이터에 올해 소득이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작년 임금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작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시간 및 전일/파트 타임 여부 등은 다른 관찰 값을 이용한 클리닝이 끝난 값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소득과 교육관련 변수는 최대한 CNEF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 변수의 선택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

11) 이러한 조정으로 2015년 수집된 데이터는 배우자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분석에서 제외되게 된다.

12) 분석에서 전년도 임금을 활용한 1차 년도 기준 1,168개의 케이스를 활용한 결과와 현재 임금을 활용한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으나, 결과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국가 간 최대한 동일한 변수를 활용하여 비교하고자 최종적으로 현재년도 기준의 임금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배우자 소득 변수는 CNEF 데이터의 근로소득을 활용하며, 이 변수는 임금 및 비임금 근로를 통한 연소득이다. 소득변수는 해당 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화하여 사용한다. 다만, 독일의 경우는 취업여부 변수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또한 전년도 기준이며,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독일은 취업여부 변수와 동일하게 올해 수치는 전년도 표본에 미루어 붙여서 당해년도 소득으로 조정하여 구성하여 한국과 독일 패널 변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춘다. 실질화한 소득은 고소득, 중간, 저소득으로 범주화하여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계층별 여성의 고용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범주화는 본 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배우자 소득을 기준으로 1사분위 이하는 저소득, 2사분위 및 3사분위는 중간소득, 4사분위보다 큰 소득은 고소득으로 구분한다.

막내 자녀 나이는 각 출산년도로 구분된 표본에서의 각 엄마의 마지막 출산을 관찰하여, 그 막내 자녀의 개월 수를 활용한다. 이에 해당 자녀의 출생 년도 포함하여 모의 고용에 공급 및 수요에 영향을 주는 시간 효과를 통제한다. 엄마의 나이는 코호트 효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엄마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녀 수를 추가한다.

이렇게 구성된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한국과 독일은 각 기간 동안 여성의 취업자 비중이 우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1 기간만 1세 자녀 엄마의 취업자 비중은 24.6%, 만 3세 자녀 엄마의 경우 30.1%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만 1세 자녀 엄마 40.5%, 만 3세 자녀 엄마 66.7%에 이른다. 제 2 기간 독일은 취업자 비중이 한국보다 더욱 증가하여 만 1세 자녀 엄마 52.6%, 만 3세 자녀 엄마 74.8%인데 반해, 한국은 동일 자녀 연령 취업 비중이 각각 28.7%, 38.8%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표본의 일반 특성

		1기									2기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미취업	취업	전체	
노동패널	엄마연령	31.9	31.7	31.8	33.0	32.6	32.9	34.0	33.5	33.9	33.9	33.9	33.9	35.1	34.8	35.0	36.2	35.6	36.0	
	출생년도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10	2011	2010	2010	2011	2010	2010	2011	2010	
	자녀월령	3	5	4	4	4	4	3	4	4	9	0	9	9	0	9	8	1	9	
	자녀수	1.76	1.77	1.76	3.00	3.00	3.00	4.24	4.25	4.24	17.4	17.6	17.5	29.1	29.4	29.2	40.9	40.8	40.8	
	배우자 소득	저	1.8	1.7	1.8	1.9	1.8	1.9	1.9	1.9	1.9	2.0	1.8	1.9	2.0	1.9	1.9	2.0	1.9	1.9
		중	77.9	22.1	25.8	65.0	35.0	25.4	63.9	36.1	25.2	74.8	25.2	119	65.0	35.0	120	53.2	46.8	124
		고	75.1	24.9	51.1	70.1	29.9	51.1	66.0	34.0	52.0	68.3	31.7	246	65.6	34.4	244	64.6	35.4	243
	배우자 학력	저	73.5	26.5	23.3	74.3	25.7	25.7	69.6	30.4	25.0	73.9	26.1	119	69.2	30.8	120	62.4	37.6	117
		중	84.4	15.6	42.9	76.9	23.1	42.0	73.6	26.4	42.0	77.2	22.8	162	70.4	29.6	162	66.3	33.8	160
		고	81.6	18.4	20.7	73.5	26.5	21.1	68.8	31.3	20.8	75.2	24.8	109	66.1	33.9	109	60.9	39.1	110
본인 학력	저	62.2	37.8	38.6	60.4	39.6	39.1	57.4	42.6	39.4	64.8	35.2	213	63.4	36.6	213	57.5	42.5	214	
	중	82.3	17.7	51.5	76.3	23.7	51.4	73.7	26.3	50.6	81.7	18.3	164	75.0	25.0	164	69.3	30.7	163	
	고	76.6	23.4	24.4	72.3	27.7	24.2	63.3	36.7	24.5	68.7	31.3	134	64.9	35.1	134	59.7	40.3	134	
전체	75.4	24.6	102.2	69.9	30.1	102.2	66.3	33.7	102.2	71.3	28.7	484	66.3	33.7	484	61.2	38.8	484		
근로패널	엄마연령	33.0	33.6	33.2	34.1	34.3	34.2	35.2	35.3	35.3	34.4	35.2	34.8	35.3	36.1	35.8	36.1	37.0	36.8	
	출생년도	1999	2000	1999	1999	2000	1999	1998	2000	199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자녀월령	3	1	6	0	1	6	8	0	6	1	0	0	1	0	0	1	0	0	
	자녀수	1.71	1.77	1.73	2.90	2.98	2.94	4.14	4.17	4.16	17.5	18.7	18.2	29.5	30.4	30.1	41.6	42.0	41.9	
	배우자 소득	저	2.2	1.9	2.1	2.2	1.9	2.0	2.2	2.0	2.0	2.6	2.1	2.3	2.6	2.1	2.3	2.6	2.2	2.3
		중	53.2	46.8	22.0	44.4	55.6	22.5	30.7	69.3	23.1	59.6	40.4	166	50.3	49.7	171	42.6	57.4	169
		고	63.2	36.8	48.1	41.5	58.5	48.4	32.1	67.9	48.8	43.1	56.9	35.0	28.4	71.6	33.8	23.2	76.8	34.1
	배우자 학력	저	57.8	42.2	23.2	50.4	49.6	22.4	38.5	61.5	23.4	44.3	55.7	167	29.3	70.7	174	12.1	87.9	173
		중	61.1	38.9	13.1	50.4	49.6	12.5	43.3	56.7	12.7	70.5	29.5	8.8	59.3	40.7	8.6	53.5	46.5	8.6
		고	60.9	39.1	5.0	42.9	57.1	5.6	31.1	68.9	5.9	46.8	53.2	4.0	32.9	67.1	4.0	22.7	77.3	4.0
본인 학력	저	55.4	44.6	2.4	44.7	55.3	2.4	33.2	66.8	2.4	38.2	61.8	1.9	25.3	74.7	1.9	17.7	82.3	1.9	
	중	72.4	27.6	1.8	55.2	44.8	1.8	45.4	54.6	1.8	75.6	24.4	8.2	59.8	40.2	8.2	49.4	50.6	8.1	
	고	59.2	40.8	5.9	45.3	54.7	5.9	32.5	67.5	5.7	46.1	53.9	4.4	33.2	66.8	4.3	22.8	77.2	4.3	
전체	47.6	52.4	1.8	31.6	68.4	1.9	24.4	75.6	1.9	38.0	62.0	1.8	25.0	75.0	1.8	20.1	79.9	1.8		
전체	59.5	40.5	9.3	44.4	55.6	9.3	33.3	66.7	9.3	47.4	52.6	6.8	34.1	65.9	6.8	25.2	74.8	6.8		

주: 한국노동패널은 1기는 1999~2008년, 2기는 2008~2013년 출생 자녀 기준이며, 독일 GSope은 1기 1993~2006년, 2기는 2007~2011년 출생 자녀 기준임.

V. 연구결과

한국과 독일과의 가족 정책 레짐별 여성 내부의 불평등성에 미치는 차이, 그리고 각 국가 내 돌봄 정책 레짐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성에 미치는 차이를 살펴보면 <표 3>의 분석 결과와 같다.

우선, 엄마들 본인의 학력과 배우자 소득에 따른 여성 내부 집단별 고용에 있어 불평등성이 나타나지 살펴본다. 제 1 기간 동안(독일: 막내 자녀 1993~2006년 출생, 한국: 막내 자녀 1999~2008년 출생) 두 국가의 가족화 정도로 가족정책 레짐을 판단하면 독일은 탈가족화 수준은 낮고 가족화 수준은 높은 명시적 가족주의(explicit familism), 반면 한국은 두 수준이 모두 낮은 암묵적 가족주의(implicit familism)로 분류됨을 전술하였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다음 기간보다는 제 1 기간 동안은 탈가족화를 위한 정책 지향성을 보이고 있었다는 차이가 있다.

먼저, 두 국가 간 정책 레짐 차이별로 어떠한 결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우선 제 1기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여성 내부의 계층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선택한 엄마 학력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자녀 월령 기간 구분에 관계없이 저학력 여성보다 학력이 높은 엄마일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지며, 이것이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엄마들 또한 고학력일수록 취업 가능성은 높아지나 독일 여성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독일의 12~24개월의 자녀를 둔 엄마가 고학력일 때 한국 엄마보다 더 큰 확률(14.3%p)로 노동시장 참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0.037, 0.042). 이러한 현상은 출산 후 48개월 기간까지 모두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기에서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 독일 엄마가 한국 엄마보다 더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학력에 따른 계층화의 정도는 전기에서는 독일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1기의 출산 후 자녀 월령 기간이 변함에 따라 여성 학력에 따른 영향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중간 학력(전문대졸 정도)을 가진 여성은 저학력 여성과 출산 초기 년도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출산 후 36개월이 지나서야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8.3%p).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은 출산 후 12~48개월 모든 기간 저학력 여성보다는 평균 13.7% 더 높은 확률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지만, 그 가능성은 아이가 만 2세가 넘어 실 때 더 높아진다. 반면, 독일 여성은 고학력의 엄마는 자녀 월령에 따른 기간구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꾸준히 저학력 여성보다 노동시장 진출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1 기간 엄마의 학력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성이 독일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한다. 독일의 자녀 만 2세 기간동안 지속 가능한 부모 휴가 기간은 저학력 여성 보다는 고학력의 인적 자본을 가진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고 있으며, 독일과 한국 모두 출산 후 휴가를 활용할 수 없는 만 3세 이후 두 국가의 차이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기간 배우자의 소득의 영향은 어떠한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두 국가의 엄마들은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일할 확률이 낮아진다. 다만, 한국은 자녀가 만 1세로 아주 어릴 때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만2세 기간 동안 저소득 배우자의 아내보다 고소득 배우자의 아내는 17%p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 엄마들은 저소득 배우자보다 고소득 배우자일 때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이 자녀가 만 2세가

넘을 때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11.8%p→ -14.3%p, -14.2%p). 두 국가의 배우자 소득 계층별 여성 고용에 불평등성은 독일은 자녀 만 1세기간, 한국은 만 2세기간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며, 두 국가 간 일관성 있는 크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 3> 자녀 월령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분석 결과-평균한계효과

G-Soep		1993~2006년 출생자			2007년~2011년 출생 자녀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아빠 학력	중간	-0.045	0.048	0.100*	0.139**	0.142**	0.172***
	고	-0.046	-0.001	0.068	0.204**	0.19**	0.187**
소득 터미	중간	-0.129***	0	-0.047	0.084	0.145***	0.106**
	고	-0.118**	-0.143***	-0.142***	-0.001	0.09	0.211***
엄마 학력	중간	0.129***	0.088*	0.107**	0.224***	0.141**	0.104*
	고	0.249***	0.268***	0.21***	0.281***	0.191**	0.069
엄마 연령		0.003	0.000	-0.002	0.006	0.004	0.002
막내 자녀 출생년도		0.011**	0.017***	0.017***	0.008	0.024	0.011
막내 자녀 월령		0.014***	0.019***	0.006	0.029***	0.023***	0.009
자녀 수		-0.06***	-0.072***	-0.064***	-0.139***	-0.108***	-0.08***
관측 수		933			683		

노동 패널		1999~2008년 출생자			2009년~2013년 출생 자녀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아빠 학력	중간	0.016	0.031	0.027	-0.020	0.011	0.023
	고	0.177***	0.128***	0.121***	0.058	0.002	0.037
소득 터미	중간	-0.006	-0.079**	-0.047	0.034	-0.024	-0.127**
	고	-0.041	-0.169***	-0.119***	-0.058	-0.079	-0.127*
엄마 학력	중간	0.015	0.021	0.083**	0.127**	0.103*	0.087
	고	0.106***	0.169***	0.136***	0.143***	0.160***	0.142**
엄마 연령		-0.002	-0.005	-0.007	0.0028	-0.003	-0.010
막내 자녀 출생년도		0.003	-0.001	-0.001	0.020	0.020	0.025
막내 자녀 월령		0.004	0.003	0.003	0.007	0.012*	0.003
자녀 수		-0.030	-0.025	-0.013	-0.044	-0.044	0.005
관측 수		1,022			484		

이러한 결과는 2년의 자산대비 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구성을 가진 독일에서 저소득 엄마들도 집에, 고소득 엄마들도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한국보다 독일이 덜 계층적인 것이라는 가설 3과는 다르다. 돌봄 대안이 부재하고, 자녀에 대한 돌봄 이상이 여전히 매우 전통적 성분업적인 한국의 상황이 저소득 가구의 어린 자녀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시기동안 독일의 부모 수당이 1년의 높은 수당, 2년의 낮은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구의 엄마들이 1년의 높은 수당을 받고 출생 12개월 이후 빠른 노동시장 복귀를 선택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

저조는 자녀 월령 각 기간 어머니의 고용비율(한국: 24.6~33.7%, 독일: 40.5%~66.7%)의 국가 간 격차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후에 분석한 <표 5>의 다항로지 결과를 통해, 배우자 소득이 낮은 독일 어머니는 일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것보다 만 1세 기간부터 더 빠르게 전일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트타임으로 가는 독일 어머니는 가설과 같이 만 3세가 되어야 배우자 소득이 높을 때 노동시장 참여를 한다.

통제 변수들의 결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은 모든 기간에서 막내 자녀의 출생이 최근일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막내 자녀의 월령이 높을수록 일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 3세 기간에는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은 배우자 학력을 제외하고는 유의미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배우자 학력이 저학력일 때보다 고학력일 때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자녀 월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영향력이 낮아진다.

<표 4> 국가내 기간 차이, 각 기간별 국가에 따른 효과 차이 χ^2 검정 결과

		국가내 차이						국가간 차이					
		독일 기간 구분에 따른 레짐 변화			한국 기간 구분에 따른 레짐 변화			1차 기간			2차 기간		
		12~24	24~36	36~48	12~24	24~36	36~48	12~24	24~36	36~48	12~24	24~36	36~48
남편 소득	중	0.002	0.028	0.011	0.525	0.415	0.243	0.025	0.166	0.997	0.514	0.025	0.002
	고	0.173	0.005	0.000	0.816	0.243	0.921	0.247	0.709	0.742	0.528	0.060	0.000
본인 학력	중	0.233	0.533	0.964	0.080	0.225	0.961	0.037	0.266	0.698	0.264	0.671	0.843
	고	0.737	0.436	0.126	0.598	0.908	0.941	0.042	0.172	0.297	0.149	0.757	0.453

주: 각 국가(m)의 기간(j)별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대한 독립 변수(배우자 소득구간과 본인 학력, j)의 AME(평균한계효과)의 계수차이 검정을 시행함.

$$\chi^2(1) \approx (AME_{mij} - AME_{nij})^2 / (var(AME_{mij}) + var(AME_{nij}))$$

국가별 가족 정책 레짐이 바뀌었다고 평가되는 2기의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 학력에 대해서 한국은 그 영향력이 1기에 비해 다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가 만1세 기간 부터 저학력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 참여 확률은 10%p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경향은 1993~2008년, 1기 기간 동안의 정부 정책이 명시적으로 탈가족화 정책 추진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2009년 이후 가족화를 강화하면서 더욱 암묵적 가족주의로 돌아섰다는 평가와 비추어 보았을 때, (재)가족화 강화, 민간 보육시설 중심의 현금 지원책, 가정 양육 수당 도입 등의 정책 전환은 여성의 학력에 따른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을 띄게 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영향력은 자녀 만 2세까지는 그 유의미성을 상실하였으나, 만 3세 기간 동안은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소득의 배우자를 둔 여성보다 취업 확률은 12.7%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의 확률 차이보다 불평등성이 더 확대되었다. 결국, 한국

14) 다만, 계수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자녀 만 1세 중간 학력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의 경우 막내 자녀 만 3세 이후 기간의 배우자 소득 수준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보다 유의성이나 영향력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녀의 월령이 만 3세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 배우자 소득 수준별 노동시장 참여 불평등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월령 구간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취업은 높아지지만¹⁵⁾ 취업에 있어 여성 내부의 불평등성의 계층화도 커지고 있으며, 만 3세 구간에서는 1기보다 그 계층성이 뚜렷해졌다고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다. 어머니 학력에 대한 계층성은 만 1세 구간에서는 높아지고, 24개월 이후부터는 다소 줄었다. 기존 3년까지 쓸 수 있던 부모 휴가 기간의 축소(출산 후 최대 14개월)와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24개월 이후 여성의 학력별 계층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독일의 결과에서 놀라운 것은 배우자의 소득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이전 시기, 기존 연구와 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¹⁶⁾.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도 매우 다르며,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표 4>. 왜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에 제시될 다항 로지 결과를 확인하면서 다음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명시적 가족주의에서 스웨덴 등의 시민주의 국가들의 선택적 가족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가족 정책 레짐의 변화와 본 미시 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독일은 2007년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 배우자 소득의 여성 고용의 불평등성은 그 영향력을 잃고 있으며, 자녀가 만 2세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여성 본인의 학력 또한 불평등성의 계층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제 변수 중 배우자 학력이 높을수록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져 2007년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막내 자녀 월령이 높을 때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높으며 자녀수는 모든 기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독일과 한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는 두 국가 모두 여성의 학력과 배우자 소득 집 단별로 차별적인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보임으로써 여성 내부의 불평등성의 계층화가 가시화되었 음은 명백하다. 더욱이 한국은 독일보다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더욱 탈가족화 수준을 약화시키고 보수적 성역할 인식을 지향하고 있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도 독일보다는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2000년대 후반 가족 정책의 지향점을 수정하여 탈가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고 이는 여성의 계층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 만 2세 이후 시점에는 이러한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녀가 만3세 이후 시점에서 더욱 불평등의 계층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국의 경우 2008년 출생 자녀부터 육아휴직 가능성이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200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도입이라는 가족화 정책 방향이 2009년 이후 만 3세 자녀의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배우자 소득이 낮을 때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수준별 불평등성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15) 표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24개월 28.7%, 24~36개월 33.7%, 36~48개월 38.8%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6) 데이터에서 배우자 현재소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축소때문은 아닌지 검증하였으나,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지난해 소득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앞선 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분석 제 2기에 엄마의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간 불평등성은 독일은 역시 낮아지고 한국은 이전 기간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된다. 반면,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불평등성은 독일과 한국 모두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독일은 확실히 자녀 24개월까지 기간은 낮아졌으며, 이후 기간은 방향성이 바뀌어 좀 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은 오히려 자녀 만 2세까지는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의 육아 휴직 기간은 1년으로 동일했으나, 휴가가 가능한 자녀 연령이 확대되었고, 가정양육수당이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2013년 보편적 확대 전까지 만2세 아동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녀 만 2세까지의 배우자 소득에 따른 엄마 고용의 불평등성이 약화되었을 것을 예상하였고,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만 3세 이후 배우자 소득 계층 간 불평등성이 확대되고 유의미한 것 또한 가설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다항로지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2000년대 후반 이후 자녀를 둔 여성의 파트 타임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세 미만 여성의 경우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에서 2007년 가족정책 레짐의 변화 이후로 나타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원인을 본 분석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1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년 이전의 명시적 가족주의 레짐 하에서의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않은 여성과 달리 전일제 근로를 선택한 여성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영향력은 아이의 월령이 증가할때도 꾸준히 높게 나타나며 만 2세 자녀일 때, 배우자가 저소득이고, 엄마가 고학력일 때 가장 높은 확률로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한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는 배우자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자녀가 만 1세일 때는 중간소득 배우자보다는 저소득 배우자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로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 3세가 되면 남성이 고소득일 때보다 저소득 배우자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로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학력 또한,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을 때 파트타임 근로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전일제 근로를 선택할 때보다는 크지 않다. 통제변수는 가장 어린 월령 구간인 만 1세 자녀를 둔 엄마의 경우 연령이 높을 때, 자녀 월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 때 일하지 않는 것보다는 전일제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 만 2세 자녀를 둔 경우엔 엄마 연령의 유의미성은 사라진 반면 자녀의 출생년도가 최근일수록 전일제 근로를 하게 되며, 만 3세가 될 때는 자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녀수가 많을 때는 전일제보다는 파트타임을, 파트타임보다는 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각 구간에서 자녀 월령이 높을 때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엄마의 학력이 고학력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 고학력 여성은 일하는 것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파트타임보다는 전일제로 근로한다. 일하지 않는 것보다 파트타임 근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통제변수의 영향은 자녀의 출생년도가 최근일수록, 월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파트타임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하지 않는 여성과 전일제 여성 간의 계층간 불평등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기간별 자녀 월령 구분별 근로형태 다항 로짓 분석결과-독일

독일		전일제			파트타임		
다항로지-1시기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아빠 학력	중간	-0.102	0.548	0.248	-0.202	0.161	0.468**
	고	-0.481	0.291	0.198	-0.158	-0.022	0.318
소득 더미	중간	-2.029***	-1.442***	-1.138***	-0.305*	0.222	-0.079
	고	-2.075***	-2.150***	-1.754***	-0.23	-0.326	-0.459*
엄마 학력	중간	1.001*	1.764***	1.164***	0.538**	0.229	0.370*
	고	1.864***	2.558***	1.917***	0.975***	1.001***	0.848***
엄마 연령		0.115***	0.051	0.032	0.000	-0.005	-0.015
막내 자녀 출생년도		0.05	0.070*	0.052	0.045**	0.068***	0.082***
막내 자녀 월령		0.099**	0.085**	0.05	0.056***	0.075***	0.023
자녀 수		-0.573***	-0.672***	-0.612***	-0.209**	-0.250***	-0.248***
상수항		-105.857	-146.408*	-106.848	-91.409**	-138.284***	-163.654***

독일 다항로지 -2기		전일제			파트타임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아빠 학력	중간	0.921	1.315**	1.117**	0.495	0.488*	0.754**
	고	1.428*	1.818**	1.476**	0.721**	0.658*	0.777**
소득 더미	중간	-0.565	-0.166	-0.434	0.501**	0.799***	0.763***
	고	-0.865*	-0.407	0.233	0.165	0.558**	1.523***
엄마 학력	중간	0.232	0.268	0.901*	1.064***	0.659**	0.507*
	고	0.881	0.847	1.116*	1.233***	0.828**	0.193
엄마 연령		0.065*	0.074**	0.051	0.018	0.008	0.004
막내 자녀 출생년도		-0.044	0.122	0.066	0.042	0.108	0.063
막내 자녀 월령		0.075	0.07	0.019	0.121***	0.110***	0.066*
자녀 수		-0.836***	-0.820***	-0.734***	-0.510***	-0.433***	-0.402***
상수항		83.762	-249.897	-136.386	-88.134	-220.011	-128.046

이러한 1기의 결과는 2007년 레짐 변화 이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2007년 이후 경제활동을 참여하지 않은 것보다 전일제 근로를 선택한 여성의 배우자 소득과 본인의 학력에 따른 계층화 효과는 거의 유의미하지 않다. 만 1세 때 고소득 배우자 보다는 저소득 배우자의 여성이 좀더 전일제 근로를 하고, 남 3세 자녀를 둔 엄마는 고학력일수록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 배우자 소득과 여성 본인 학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의미한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학력이 오히려 유의미해지는데, 배우자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전일제 참여 가능성은 높아지며, 이러한 영향은 자녀가 만 2세 일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통제변수는 엄마 연령이 높을 때 만 2세 자녀까지는 좀더 전일제 근로 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우리는 독일의 2007년 이후 결과에서 배우자 소득이 높아질

수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의아한 결과를 확인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결과가 파트타임 근로의 영향력이 변화한 탓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은 2007년 가족정책 레짐 변화 이후로 안 그래도 높았던 여성의 파트타임 근로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가족 안에 머물렀던 여성을 경제활동에 끌어들이는 점은 성과로써 인식되고는 있으나, 그러한 결과가 파트타임 근로에만 향해 있다는 점은 여전히 독일 내부에서도 이견으로 존재한다. (다만, 독일의 파트타임은 한국과는 다르다. 자녀가 있는 전일제 남성과 파트타임 여성의 임금 갭이 독일 내부에서는 22.7%씩이나 되고¹⁷⁾ 여성에게 편중된 파트타임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해지지만, 36.8%의 임금 갭을 보이는 한국에서는 그러한 수치도 요원하다.) 그런데 이러한 파트타임 근로의 선택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의 계층 간 불평등성의 확대에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은 일하지 않는 것보다, 전일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파트타임 근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만 1세부터 나타나 만 3세로 갈수록 더 커진다. 이러한 엄마의 선택이 평균 부부합산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석 표본 내에서 배우자 고소득 여성 집단의 부부합산소득의 평균은 분석 기간에 걸쳐 감소하며, 배우자 저소득 여성 집단은 반대로 증가한다. 배우자 고소득과 저소득 여성 집단별로 살펴보면 엄마가 전일제로 일하는 부부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부의 합산소득의 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 소득의 불평등성을 낮추는데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밀한 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배우자 소득 수준별로 여성의 전일제 vs. 파트타임 선택이 이들 부부 집단의 부부합산소득을 줄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표본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림> 배우자 소득 수준별 평균 부부합산소득



또한, 본인의 학력은 자녀 만 2세까지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일하지 않는 것보다, 전일제로 가거나, 파트타임 근로를 선택한다. 자녀가 만3세가 되면 그래도 파트타임보다는 전일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배우자 소득이 높을 때는 전일제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택하며 이는 계수값으로도 유의도로도 가장 강력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 남성 전일제-여성 파트타임 가구가 규범

17) GSOPE은 2015년 차이, 노동패널은 2016년 수치 기준이며, 자녀가 있는 남성과 여성의 전일제, 파트타임 여부에 따른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것이다.

으로서 굳어지고 있는 현상과도 직결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 가구, 본인 스스로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레짐의 변화 속에서 계층화된 엄마 집단에서 고소득, 고학력 여성의 선택은 파트타임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는 달리 파트타임의 일자리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그동안 보육서비스의 향상이 이루어졌을 것,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사회의 돌봄 이상이 변화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기간별 자녀 월령 구분별 근로형태 다항 로짓 분석결과-한국

노동패널 다항로짓 1기(1999~2008)		전일제			파트타임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아빠	중간	0.006	0.107	0.086	0.457	0.298	0.255
학력	고	0.804***	0.700***	0.591***	1.472***	0.405	0.437
소득	중간	-0.013	-0.287	-0.102	-0.019	-0.487*	-0.439
더미	고	-0.145	-0.795***	-0.510**	-0.444	-0.885***	-0.617*
엄마	중간	0.141	0.22	0.350*	-0.06	-0.196	0.487
학력	고	0.602***	0.700***	0.533**	0.467	0.973***	0.821***
엄마 연령		-0.039	-0.051**	-0.057***	0.048	0.019	0.013
막내 자녀 출생년도		0.03	0.007	0.014	-0.022	-0.022	-0.046
막내 자녀 월령		0.005	0.013	0.019	0.068*	0.014	0.000
자녀 수		-0.338**	-0.204	-0.183	0.256	0.063	0.234
상수항		-60.385	-13.071	-27.39	38.214	40.398	89.479

노동패널 다항로짓 2기(2009~2013)		전일제			파트타임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12~24개월	24~36개월	36~48개월
아빠	중간	-0.226	0.13	0.036	0.463	-0.106	0.23
학력	고	0.256	0.262	0.199	0.579	-0.723	0.048
소득	중간	0.078	-0.103	-0.640**	0.643	-0.085	-0.229
더미	고	-0.164	-0.239	-0.683**	-1.334	-0.795	-0.112
엄마	중간	0.570*	0.572*	0.501*	1.254*	0.312	0.109
학력	고	0.698**	0.775**	0.757**	0.987	0.681	0.206
엄마 연령		-0.018	-0.038	-0.036	0.175***	0.048	-0.039
막내 자녀 출생년도		0.053	0.065	0.028	0.338*	0.173	0.309**
막내 자녀 월령		0.019	0.061*	0.014	0.146**	0.034	0.011
자녀 수		-0.245	-0.218	-0.164	-0.17	-0.145	0.453**
상수항		-108.436	-132.163	-55.372	-692.892*	-352.568	-621.798**

마찬가지로 한국 노동패널 다항로짓 결과를 확인하기로 한다. 1999~2008년 기간 동안 일하지 않는 것에 비해 전일제, 혹은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변수의 영향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만 2세의 로짓 결과의 배우자 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전일제 선택보다는 파트타임으로 가는 여성이 더욱 배우자 소득에 따른 선택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 영향력이 다소 달라지는데, 아이 연령이 만 2세 이후에는 엄마 연령이 낮을수록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엄마의 학력에 따른 영향력이 이전 기간, 파트타임 참여 엄마에 비해 크고 유의하게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로짓 결과에서도 엄마 학력의 불평등성의 계층화가 다소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더해 여성의 학력에 따른 불평등성의 계층화가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엄마들에서 더욱 강하게 보여 지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전일제와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의 차별성을 미루어봤을 때, 이러한 결과는 가족정책의 레짐 변화는 고학력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 노동시장 참여 결정시 불평등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파트타임 여성에서는 여성의 학력의 영향을 확인되지 않았다.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도 앞서 만 3세 구간에서 그 영향력이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 결정을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결론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탈가족적 레짐 변화를 보인 독일과 좀 더 가족화적 레짐 변화를 보인 한국은 여성의 고용률 면에서는 두 국가 모두 일정한 성과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독일은 2007년 이후 부모휴가 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14개월로 줄이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가족정책 레짐이 명시적 가족주의로부터 선택적 가족주의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Leitner, 2017). 한국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 기간은 줄곧 1년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보육의 공공화 보다는 시장 기반 돌봄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에게 현금 급여 성격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가정 양육에 대한 보육수당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2000년대 후반의 정책 변화는 기존 탈가족화의 정책 지향에도 불구하고 암묵적 가족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에서 탈가족화 지향성마저도 약화시킴으로써 더욱 암묵주의로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석 결과, 이러한 레짐 변화는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 여성 고용이라는 성과에도 차이를 보이지만, 여성의 집단별 성과 차이를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7년 이전 독일의 여성은 '자녀 돌봄은 엄마의 몫'이며, 이에 근거한 돌봄 이상을 가진 가족정책이 투입됨에 따라, 자녀가 만 1세~만3세기간 고학력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꾸준히 높았다. 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수치를 가지지만 이 시기 한국 엄마들 또한 이러한 계층 간 불평등성을 가진다. 한국은 그 계수가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유의성을 가진다. 다만, 독일 엄마의 학력에 따른 불평등이 자녀 월령 모든 기간에서 꾸준했다면, 한국 엄마는 만2세부터 다소 강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당시 자녀 만1세까지의 육아휴

직을 활용했어야 하는 제도 내용과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자녀 만2세에서의 고용확률과 유의도가 증가하는 것은 배우자 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기 기간에서는 독일, 한국 여성들은 고소득의 배우자를 둔 고학력 엄마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독일 엄마들이 좀 더 강하게 관측되며, 가족정책 자체가 '여성을 가족의 품으로'라는 돌봄 이상의 명시적 가족주의가 엄마 고용에 있어 불평등성을 좀 더 강하게 계층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가족 정책의 변화 이후의 모습에서는 앞선 기간의 결과는 달라진다. 한국은 2009년~2013년 출생 막내 자녀, 독일은 2007~2011년 출생 막내 자녀를 둔 엄마들이 표본이었다. 한국의 엄마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 참여확률이 1기와 마찬가지로 높으며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소득에 따른 영향력은 자녀가 만 3세 기간에 이전 기간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의 지속적 확대로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산전후 휴가자의 20% 정도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6개월~3년 초과 시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진희 외, 2015). 한국은 분석 결과를 통해, 2009년 정책 레짐의 변화 이후 만 3세 이후 시점부터 엄마의 고용에 있어 불평등성의 계층화는 독일보다 높아지고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의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듯 상황이 좀 다르다. 독일은 2007년 정책 레짐의 변화 이후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이 더욱 높아졌는데, 파트타임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전일제 여성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독일 내부의 전일제 여성의 불평등성의 계층화는 2007년 매우 강한 상태였으나 2007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파트타임 여성의 계층별 고용 선택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우선,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여성의 학력에 따른 영향력은 2007년 이후 다소 강해졌다. 하지만, 자녀가 만 2세, 만3세로 갈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들음을 확인했다.

배우자 소득은 독일의 이전 결과 또는 한국의 결과와는 판이하다. 배우자가 고소득일 때 일하지 않거나 전일제를 선택할 확률보다 파트타임을 선택할 확률이 커진다. 특히 자녀가 만3세일 때 여성은 남편이 고소득, 고학력일 때 파트타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엄마의 고용에 있어 불평등성의 계층화를 낮추고 있으며, 고용 성과에도 긍정적이다. 이 연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표본의 부부 합산 소득 평균을 비교할 때 전체 가구 소득의 불평등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독일의 정책 레짐의 방향과 노동시장 상황, 기존의 사회 규범과 그 변화를 담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부부가 이중소득자모형을 형성하고 있고, 부부가 모두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부모의 무급 노동시간의 배분은 50-50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독일과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는 여전히 요원하다¹⁸⁾. 부모 둘 다 전일제로 일할 때, 무급노동시간의 여성의 몫은 독일은 62.1%, 한국은 83.5%(OECD 평균 66.8%)에 이른다.

18)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Time spent in paid and unpaid work, by sex, Data extracted on 02 Oct 2017 03:52 UTC (GMT) from OECD.Stat

독일은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우리와는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일자리로 보이지만, 독일 내부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질, 남성과 여성의 전일제와 파트타임 근로 비율의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많다. 독일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파트 타임 근로자의 14%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¹⁹⁾고 보고되어, 많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의 선택이 비자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 노동시장 내에서 파트타임 비율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과 남성 간 임금격차(2014년 기준 17.1%)의 큰 원인이 여성의 파트타임 선호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사학위를 소지한 남성의 43%가 중위 소득 2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반면, 여성은 이러한 비율이 11%에 불과하다. 2007년 보육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전일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어린 자녀의 엄마들이 파트타임 근로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 장래 소득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²⁰⁾. 특히, 구 동독 지역은 전일제, 구 서독 지역에서는 반나절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며(Kreyenfeld and Geisler, 2006), 서독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24%만이 전일제 유치원에 입소한다(Hornung, 2008). 2007년 가족 정책 레짐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부에서 여성의 파트타임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의 원인으로 공적 보육의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이다. 이러한 파트타임 편중이 임금의 젠더 갭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일제 기준으로 임금의 젠더 갭은 독일의 경우 2002년 19.1%에서 점차 줄어 2008년 17.4%, 2014년 17.1%까지 떨어졌지만(OECD 평균, 2002년:18.8%, 2008년: 17.1%, 2014년: 15.1%),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임금구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안(Gesetz zur Förderung von Transparenz von Entgeltstrukturen, 이하 임금공개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으로 이제 2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의 직원은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와 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은 독일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젠더간 임금격차가 그 배경이 되었다. 독일경제연구소(DIW Berlin)의 2014년 조사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동일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인 8유로(현재 독일 최저 시급은 8.84 유로)라고 보고하고 있다. 독일 연방 정부는 여성 일자리의 파트타임 편중, 유리천장 문제, 전형적인 여성 일자리(frauentypischen Berufen)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 법안을 통해 남자가 공정하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중심 수단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채혜원, 2017).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안이 될 만한 시장 혹은 보육시설의 기반 부족과 여전히 확고한 성별 분업적 사회규범 속에서 탈가족화 약화의 우측 깜빡이는 유자녀 남녀 고용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 규범의 변화 또한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자녀 남녀의 고용률은 공식적인 시계열 통계가 일관적으로 확보되지 못해 노동패널로 추이를 확인한 결과<그림 6>, 2016년 0~2세 엄마 10명중 취업자는 3.5명, 3~5세 엄마는 4.2명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를 통해 사회 규범을 확인하면, 미취학

19)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InFocus/LabourMarket/PartTimeEmployment.html>

20) 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16,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83>

아동의 엄마에 대한 불평등적 인식을 하는 비율은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윤미례·김태일,). 한국은 또한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젠더 갭이 2002년 무려 41.0%, 2008년 39.0%, 2014년 3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²¹⁾.

한국은 전체 여성의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유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²²⁾. 그렇다면, 독일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우리의 해법인가? 물론, 독일의 상황이 엄마들의 고용 자체에도, 불평등성의 계층화에도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다. 하지만, 독일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정책은 재촉중에 있다. 게다가 여성에게 편중된 파트타임이라는 상황 또한 긍정적이지는 않아 남성=전일제, 여성=파트타임이라는 새로운 성별 분리가 일어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홍찬숙, 2011). 한국 상황에서 엄마들에게 전일제만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라는 것이 답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파트타임 일자리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파트타임 일자리의 확대는 절대 그 답이 될 수 없다. 독일 여성의 우리보다는 꽤 괜찮은 파트타임 일자리조차도 독일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지 않은가? 이 시점에서 한국은 우선 돌봄 이상(care ideal)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돌봄 이상은 평등한 젠더를 향한 것처럼 보이고, 2016년 5.3%의 아버지 육아휴직 활용 비율이 대단한 숫자처럼 말해지지만, 여전히 94.7%는 여전히 사회 규범에 있어 젠더 평등은 요원해 보인다. 아이 돌봄이 엄마의 몫이라는 사회 규범은 쉬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사회적 규범을 재검토했을 때 방향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편적 소득자-양육자 통합 모델(universal earner-carer model)로의 진전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늘 있어왔던 이야기지만, 탈가족화를 강화하고, 부모의 돌봄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족 역할에 대한 젠더 중립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2) OECD Family database, 0~5세 자녀의 고용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50%이상이지만, 한국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and Society 24(2): 260-278

Kopf, E. and C. Zabel(2017), "Activation programmes for women with a partner in Germany: Challenge or replication of traditional gender roles" *Int J Soc Welfare* 26: 239-253

Leitner, M.(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353-375

_____ (2017), "Gender and Family in European Economic Policy- Reconciliation of Employment and Childcare in Austria, Germany and Iceland. Examples for Gender Equality in Family Life?" *Developments in the New Millennium*

Liechti, L.(2016), "Resource-related inequalities in mothers' employment in two family-policy regimes: evidence from Switzerland and West Germany" *European Societies* 19(1): 91-112

Lokteff, M and Piercy, K.(2012), "'Who Cares for the Children?' Lessons from a Global Perspective of Child Care Polic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1): 120-130

Sainsbury, D.(eds.)(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insbury, D.(ed.)(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raceno(2016), "Varieties of familialism: Comparing four southern European and East Asian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6(4): 314-326

Schober·Spiess(2015), "Local Day Care Quality and Maternal Employment: Evidence From East and West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3): 712-729

Schober, Pia S and Schmitt, Christian(2013), "Day-Care Expansion and Parental Subjective Well-Being: Evidence from Germany".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ippermann, C.(2016) "Was junge Frauen wollen, Lebensrealitäten und familien- und gleichstellungspolitische Erwartungen von Frauen zwischen 18 und 40 Jahren" Friedrich-Ebert-Stiftung Forum Politik und Gesellschaft

Zoch·Hondralis(2017), "The Expansion of Low-Cost, State-Subsidized Childcare Availability and Mother' Return-to-Work Behaviour in East and West Germany(2017)".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3(5): 693-707

<http://www.dw.com/en/family-policy-becomes-new-german-election-battleground/a-3829232>

<부표 1> 성별, 근로형태별 임금 갭

[단위: %]

	한국			독일		
	아빠-파트	엄마-전일	엄마-파트	아빠-파트	엄마-전일	엄마-파트
2001	335.2	62.3	114.8	100.9	66.9	66.5
2002	280.4	62.5	91.2	106.5	67.8	68.5
2003	244.9	63.8	103.7	88.1	71.2	68.3
2004	136.8	60.8	88.1	93.3	70.5	74.2
2005	120.9	57.2	64.9	77.2	67.7	71.6
2006	137.8	57.6	68.5	72.0	69.2	68.7
2007	119.6	56.0	69.6	80.5	67.5	68.5
2008	143.3	59.7	50.7	107.4	64.3	67.5
2009	109.1	60.1	60.0	102.7	70.8	71.6
2010	132.5	62.0	59.8	99.7	72.4	70.4
2011	162.3	61.1	64.3	104.1	70.6	70.9
2012	86.8	65.0	54.8	103.3	73.6	73.1
2013	126.8	64.2	57.4	90.4	78.6	72.6
2014	95.6	66.2	63.6	85.6	69.3	74.4
2015	103.4	64.4	63.2	95.1	75.1	77.3
2016	89.9	67.6	63.2	-	-	-

주 1) 전일제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임.

2) 횡단면 가중치 적용